

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

법령명

- 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 개정안

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

- 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(‘24. 6. 10. 통보) 규제 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24. 7. 2.

국 토 교 통 부

교 통 서 비 스 정 책 과